



(auri)



No. 23

2013. 12.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

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고려한 관련 법 개정 방안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 이세진 연구원

■ 요약

-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한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범위에서만 건축될 수 있으나, 현재의 법령과 조례는 한옥의 형태와 건축적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한옥 건축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한옥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의한 한옥의 형태적 제약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옥 건축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함

■ 정책제안

- 한옥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하고, 한옥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 필요
- 개별적인 배제조항이나 완화조항의 신설만으로는 본격적인 한옥 건축의 진흥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옥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건축 기준 검토 필요
-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창구와 흥보 수단 마련 필요

1. 법령에 의한 한옥의 정의와 범위¹

■ 구조, 재료, 양식의 세 가지 기준으로 한옥의 범위 한정

- 한옥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처음 제도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대통령령에 명시된 것은 이보다 늦은 2009년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2010년 2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임
※ 2002년 2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같은 해 5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대통령령과 각 조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구조·재료·양식’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한옥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목구조 방식의 한식지붕틀’, ‘자연재료’, ‘전통미 유지 및 전통양식 반영’을 요구하고 있음
 - 각 조례에서 정의된 한옥의 모습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기준이 생략되거나 추가됨

표 1. 대통령령에 명시된 한옥의 정의

법령명	소관 부처	소관 부서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벽침,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010.2.18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과	6. 관광면의시설업의 종류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009.10.7 신설]

■ 건축법 등에 의해 한옥의 규모와 형태가 제한

- 한옥은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해 규모 및 형태를 규제받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규정됨
- 일부 설비 및 시설의 안전과 관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형태가 결정됨
- 관련법에 의한 한옥 형태의 규제 범위는 크게 면적과 지붕 형태, 높이와 공간 배치, 설비와 세부 의장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1 본 글은 ‘이강민 외(2013),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요약하여 작성함

표 2. 한옥의 규모 및 형태를 규제하는 관련법

규제 항목		국계법	건축법	편의증진법	주택건설기준	지구단위계획
면적 및 지붕형태	건축물의 건폐율	제77조 령제84조	제55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78조 령제85조	제56조			
	건축선의 지정		제46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7조			
	대지 안의 공지		령제80조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119조			
	지붕 비율 및 형태					해당 지역
높이 및 공간배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령제86조			
설비 및 세부 의장	난간의 높이 제한		령제40조		제18조	
	난간의 재료 규정				제18조	
	주출입구의 접근로 장애요소 제거			령제4조		
	담장 높이					해당 지역

2. 한옥의 면적과 지붕 형태

■ 한옥 건축 특성상 큰 의미 없는 최대 건폐율 규제

- 한옥의 규모는 일반 건축물처럼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체로 2층 이하로 지어지기 때문에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침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해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건폐율의 규제를 받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지어지는 한옥 주택의 경우 최대 건폐율 50%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이 포함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에 해당하는 경우 60%까지 가능함
- 하지만, 한옥의 경우 건물 외벽 바깥으로 돌출하는 처마로 인해 대개 건폐율 50% 이하로 건축될 수밖에 없으며, 마땅 없이 극단적으로 채우더라도 65% 수준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예를 들어 작은 필지에 최대 면적의 공간을 확보한 서울시 종로구 북촌 가회동 11번지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건폐율 50% 정도에 불과하며², 한옥의 건축 특징으로 인해 입방체의 현대 건축물에 비해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건축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한옥 건축의 경우 최대 건폐율 규정을 배제하더라도 지나친 대지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²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 현황자료에 기초해 건폐율을 산출함

표 3. 관련법규 내 한옥의 최대 건폐율 시뮬레이션

예示 1: 대지면적 330m ² , 마당을 둘 경우 : 건폐율 최대 63%			
건폐율	ㅁ자형 한옥	ㄱ자형 한옥	
평면도			
건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30m² - 건축면적 : 최대 206m² - 최대 건폐율 : 약 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30m² - 건축면적 : 184m² - 건폐율 : 약 55.7% 	
건폐율	ㅁ자형 한옥	ㄱ자형 한옥	
평면도			
건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30m² - 건축면적 : 최대 204m² - 최대 건폐율 : 약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30m² - 건축면적 : 171m² - 건폐율 : 약 51.8% 	
예시 2: 대지면적 165m ² , 마당을 둘 경우 : 건폐율 최대 51%			
건폐율	ㅁ자형 한옥	ㄱ자형 한옥	
평면도			
건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65m² - 건축면적 : 최대 74m² - 최대 건폐율 : 약 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65m² - 건축면적 : 78m² - 건폐율 : 약 47.2% 	
건폐율	ㅁ자형 한옥	ㄱ자형 한옥	
평면도			
건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65m² - 건축면적 : 최대 84m² - 최대 건폐율 : 약 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65m² - 건축면적 : 72m² - 건폐율 : 약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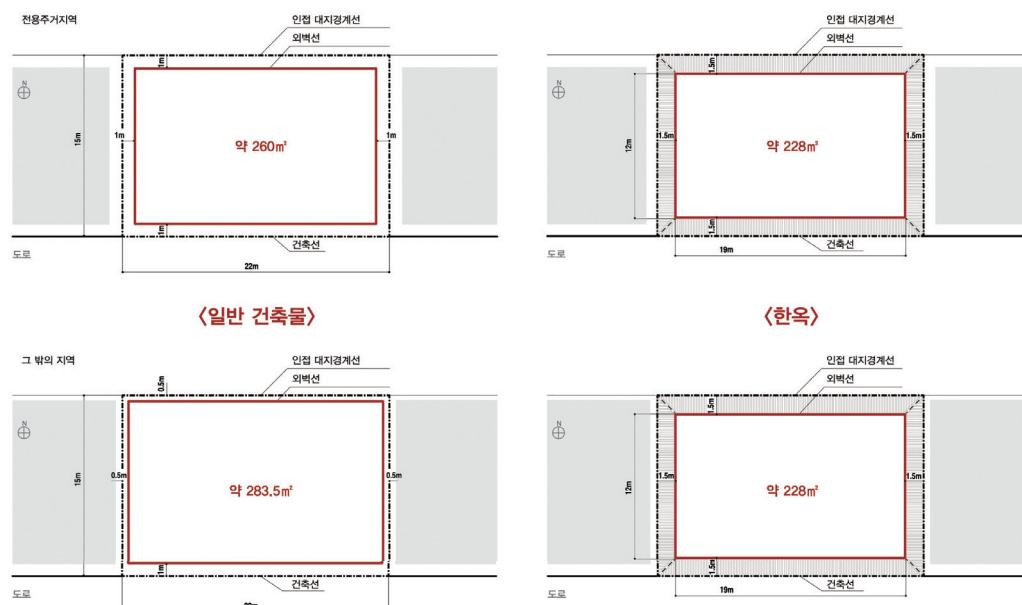
※ 처마 내민 길이는 안허리곡 없이 1.5m를 적용하여 산출함



■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소한 한옥의 실내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항에서 한옥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처마선의 이격거리를 2m이하, 외벽선은 1m이상 2m이하로 별도의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으나,³ 경사지붕의 처마선이 외벽선 바깥으로 둘러지는 한옥의 형태적 특성상 필연적으로 협소한 실내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330m²(100평) 대지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만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전용주거지역에서 최대면적은 260m²(약 78.8평, 건폐율 환산시 79%)까지 가능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283.5m²(약 85.9평, 건폐율 환산시 86%)까지 가능함
 - 그러나 처마 내밀기를 1.5m로 가정한 한옥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면적은 228m²(약 69.1평, 건폐율 환산시 69%)에 불과하여,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드러나게 됨

그림 1.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일반 건축물과 한옥의 실내공간 비교 시뮬레이션



※ 처마 내민 길이는 안허리곡 없이 1.5m를 적용하여 산출함

- 이마저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 없는 조항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빗물 등의 낙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민법 제242조에서 처마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협소한 실내면적을 가지게 됨

³ 2013년 5월 31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2 개정

- 이 때문에 한옥에서 최대한의 내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마 길이를 축소함에 따라 고유의 비례감과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반침 등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를 통한 한옥의 실내면적의 확보 필요

- 건폐율과 건축 한계선의 문제는 일부 한옥의 불법 증축 및 개조를 조장하는 측면으로 작용함
- 한옥마을의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침 등 처마 밑 공간의 증축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내면적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2일자로 건축법 제2조와 제119조에 근거해 주택의 발코니 등을 필요에 따라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바닥면적 산정에서도 제외함

그림 2. 반침 및 외측벽 확장 사례(전라남도 행복마을조성사업 월남지구)



- 한옥의 안마당 위에 투명한 차양 장치를 가설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한옥의 불법증축을 방지하고, 거주성 및 상품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

그림 3. 마당 아트리움 설치 사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 누리 레스토랑)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한옥의 몸체-지붕 비율 규정의 검토 필요

-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한옥의 몸체와 지붕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지붕의 비례가 결정됨
 - 예를 들어 서울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붕의 높이를 건축물 폭의 65% 이하로,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벽면 높이(기초~처마)가 3.0m~3.5m의 경우 지붕까지(처마~용머리선) 1:1의 높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한옥의 비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면도의 수치 비례가 아닌 제3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한옥의 몸체-지붕 비율에 대한 기준(출처: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7조, 제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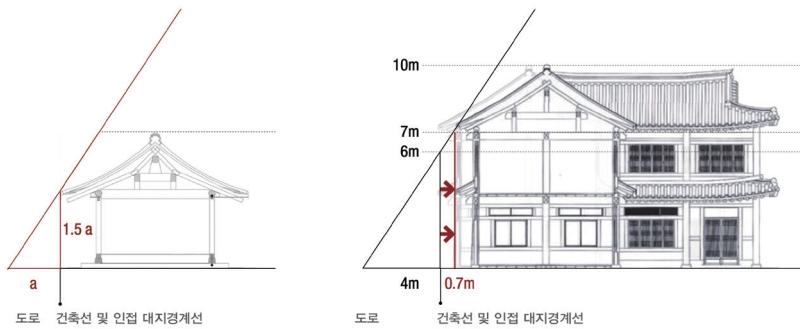
3. 한옥의 높이와 공간배치

■ 인접대로의 폭에 따른 한옥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필요

- 건축법의 도로 사선제한에 따라 협소한 가로에 면한 대지에 한옥을 짓고자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더 이격해야 함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비해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
 - 예를 들어 4m 가로에 면한 대지에 2층 한옥을 건축할 경우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0.7m 정도 더 이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대지이용 및 공간활용 측면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함
- 한옥의 경사지붕은 동일한 높이의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차폐도가 낮고, 대체로 2층 이하로 건축되는 점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⁴ 서울특별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2층 한옥의 몸체 높이 7m 이하 규정,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1층 한옥의 몸체-지붕 1:1 비율 규정에 근거하여 2층 한옥의 높이를 약 10m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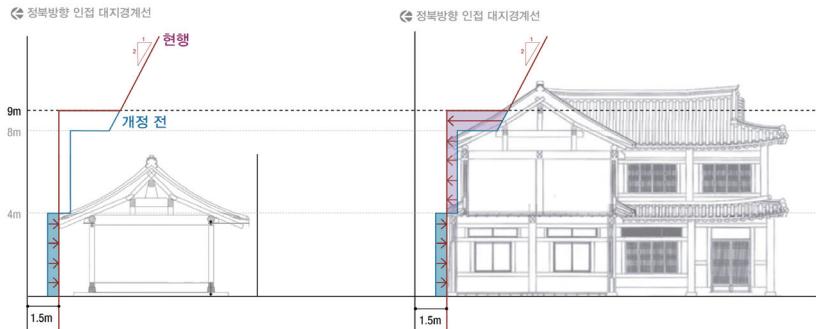
그림 5. 인접대로의 폭에 따른 한옥의 건축물 높이 규제



■ 단층 한옥에는 불리하게 개정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

- 한옥의 높이는 도로 사선제한 이외에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됨⁵에 따라 단층 한옥 건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규제하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함
 - 개정 전에는 높이 4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2m, 그 이하의 부분은 1m로 규정되었으나, 높이 9m이하인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 평균값인 1.5m로 통합되면서 높이가 낮은 한옥의 경우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더욱 어려워짐
- 따라서 대체로 2층 이하로 지어지고,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반면, 2층 한옥의 경우 4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한 이격거리가 축소됨에 따라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요구됨

그림 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한옥의 건축물 높이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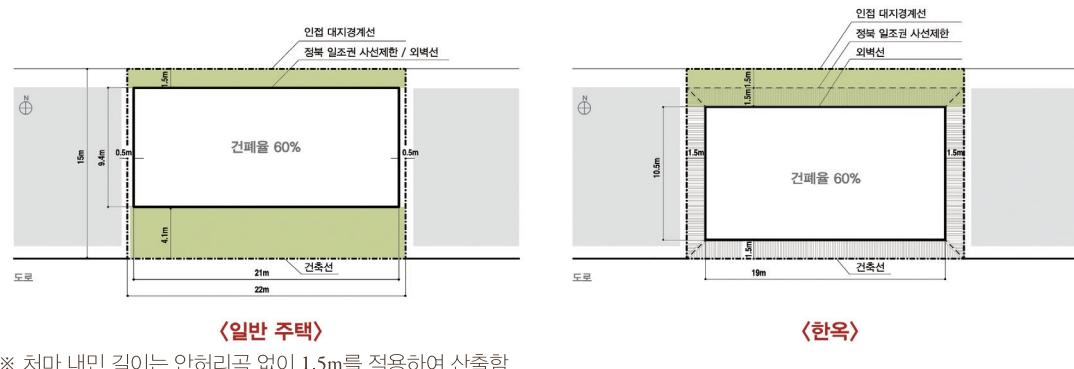


⁵ 2012년 12월 12일자로 개정

■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규제에 따른 한옥의 마당 배치 문제

- 인접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규정하는 이격거리를 준수하면서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북방향으로 마당을 두고 한옥을 배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밀집된 도시에 지어지는 한옥에서는 북측으로 뒷마당을 두고 정면이 가로에 면하는 어색한 형상을 종종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의 $330m^2$ (100평) 대지에 최대건폐율 60%를 기준으로 단층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1.5m로 인해 생겨나는 공지 이외에도 약 $90.2m^2$ 의 마당을 더 갖게 됨
 - 반면,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 내밀기로 인하여 마당 없이 꽉 채워 건축해야만 최대건폐율 6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북방향의 일조 사선제한으로 생겨난 공지를 포함하여 처마 아래 공간까지 모두 활용할 경우 비로소 3m 정도 너비의 약 $66m^2$ 의 뒷마당만을 갖게 됨

그림 7.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 적용시 일반 주택과 한옥의 마당 배치에 대한 비교 시뮬레이션



※ 처마 내민 길이는 인허리곡 없이 1.5m를 적용하여 산출함

- 따라서 처마 내밀기로 인해 인접 대지로부터 자연스레 이격거리가 발생하고, 한옥의 경사지붕은 입방체의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특징을 고려하여 완화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4. 한옥의 설비와 세부 의장

■ 고유한 비례를 해치는 난간의 높이와 재료 규정

- 전통 목조건축이 현대 건축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서 의외로 난간 설치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함

-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 한옥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본래의 규모보다 커지면서 난간이 지닌 고유의 비례미와 기능상의 장점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사실상 중충한 옥에서 계자난간 등의 설치는 불가능하게 됨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간歇은 안목치수 10cm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며, 재료에 있어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만을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한옥에 설치되는 계자난간은 평균적으로 90cm 정도의 높이가 적합하고⁶, 위로 올라가면서 40cm 정도 바깥쪽으로 휘어 돌출되어 난간상방에 팔을 걸치거나 그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을 수 있으며, 계자각 또한 최소 30c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돼야 고유의 비례미를 유지할 수 있음
- 종로구 인사동에 소재한 ‘관훈재’의 경우, 현행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2층 누마루에 규정보다 낮은 높이의 목재 난간을 설치하는 대신 그 뒤로 120cm 이상의 안전유리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여 난간의 형태와 비례감은 지켜냈지만, 계자난간에 팔을 기대어 밖을 내다보는 한옥 본래의 운치는 누릴 수 없게 됨

그림 8. 관훈재 2층 난간 모습



■ 한옥마을경관을 위한 담장 높이 규제와 이에 따른 거주자 피해

- 담장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루지는 않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그 높이를 규정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서울 인사동,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북촌, 전주 전통문화구역 등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로에 면한 담장에 한해 최고 높이를 1.8m 이하로 규정함
- 지나치게 높은 담장 설치로 인해 한옥마을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정으로, 특히 경사지에 위치한 한옥의 경우 내부가 쉽게 들여다보이는 문제로 주민 불편을 야기함

⁶ 신응수, 「대목장 신응수의 목조건축 기법: 한국건축, 천년의 지혜를 전하다」, 놀와, 2012

■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한옥 형태 규정 보완 필요

-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용도를 지닌 한옥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턱 등의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하지만, 아직은 좋은 디자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요구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유효 폭과 기울기를 고려하고, 높이 차이를 없애도록 규정함

그림 9.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 경사로 설치 사례



5.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 한옥 건축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련법 개정

- 한옥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하고, 한옥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왔음

표 4. 한옥 건축 진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연혁

법명	개정 내용	개정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처마, 차양, 부연 등의 돌출구조를 고려하여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	2009.6.31
	(제2조, 제3조) 한옥의 한옥 및 대수선의 범위에서 서까래를 배제	2010.2.18
	(제6조) 한옥의 대수선도 기준 건축률의 특례에 포함	2010.2.18
	(제6조)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에 대한 도로사선제한의 완화	2010.2.18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허용	2012.12.12
	(제80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2013.5.3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한옥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2007.12.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에 주거용 한옥의 신축 및 개축을 포함	2012.11.12

- 하지만, 한옥에 있어 불공정, 불합리한 측면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며, 시급하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한옥의 형태와 상충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한 법령의 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표 5. 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 방안

개정 목적	법규명	개정 방안
한옥의 건축적 특징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한옥에 대한 건폐율 기준 완화
		(제86조) 2층 이하로서 9m 이하의 한옥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제119조) 일정 범위 내에서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증축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한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 규제 완화, 별도의 기준 마련
		(제18조) 한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 및 재료 규정 완화, 별도의 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한 한옥의 별도 완화기준 적용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에 위치한 2층 이하의 한옥의 경우,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한옥의 특징을 고려한 건축 기준 신설 필요

- 관련법의 개별적인 배제조항이나 완화조항의 신설만으로는 본질적인 한옥건축의 진흥을 추진함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기준 신설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한옥의 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시행되어온 법령과 조례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옥이 현대 도시 및 농촌 환경에 합리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특히 올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한옥 고유의 특징을 고려한 건축 기준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문의 | sjlee@auri.re.kr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제해성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www.hanokdb.kr